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관  
람

기관  
의  
장

제1816호 2024. 2. 16.(금)

## 차 례

###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18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_\_\_\_\_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19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_\_\_\_\_ 1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20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_\_\_\_\_ 1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21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_\_\_\_\_ 2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22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_\_\_\_\_ 2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23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_\_\_\_\_ 3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24호 인천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3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25호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  
\_\_\_\_\_ 3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26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_\_\_\_\_ 4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27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_\_\_\_\_ 4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28호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	5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29호	인천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5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30호	인천광역시 서구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31호	인천광역시 서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65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2월 16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118호

###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 사회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 (이하 “방범대” 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 단위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 (이하 “연합대” 라 한다)란 각 동의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자율방범활동) ① 방범대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취약지역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3. 재해·재난 발생시 주민 구호활동 지원
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지도
5.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② 연합대는 합동 순찰 및 합동 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지도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방범대와 연합대로 한다.

제5조(경비지원 등) ① 구청장은 방범대와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 제14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법 활동에 필요원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방법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법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방법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7. 그 밖에 방법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 ② 구청장은 방법대 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법대 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법대 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라 방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법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법대 및 연합대의 정관
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4.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5.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6.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법일지
7.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법순찰 등 활동사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법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방법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방법대 또는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관할 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타 구청장은 방법대 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법대 또는 연합대는 매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법대 또는 연합대와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대의 예산 지원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0000년 (0/0분기) 지원금 신청서]	(제6조제1항제3호 관련)
-------------------------	----------------

(○○자율방범대 · 연합대)

1. 사업명:

2. 사업내용:

※기간, 장소, 사업내용 등 기재

3. 추진계획:

4.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

(단위: 원)

구분	항목	계	신청금	산출기초
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인)

[별지 제2호서식]

**[0000년 (0/0분기) 지원금 정산서]** (제6조제1항제4호 관련)

(○○자율방범대 · 연합대)

(단위: 원)

예산과목					수령액	집행액	잔액	이자 수입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실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일 자	수령액	지출액	내 용	잔 액
합계				

※ ○○ 자율방범대 · 연합대 통장 기장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각 일자별 지출결의서(대장, 총무, 회계담당 3인 결재) 작성 후 이면에 영수증 첨부

년 월 일

지출관: ○○자율방범대 · 연합대장 (서명/인)

[별지 제3호서식]

지출결의서	(제6조제1항제5호 관련)
-------	----------------

제000호	결재	담당자	총무	대장
지출과목 (비목)	매식비/ 소모품 구입비/ 피복비 등		지출일	0000.00.00.
지출금액	일금 한글기재 원정(W 숫자 기재)			
지출내용				
사용처			지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 명:</li> <li>○ 일 자: 0000. 00. 00.(0요일)</li> <li>○ 채 주:</li> <li>○ 금 액:           원</li> <li>○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li> </ul>				
<p>※ 첨부: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p>				

[별지 제4호서식]

<b>조장</b>	<b>방법대장</b>

**○○자율방범대·연합대 방법일지** (제6조제1항제6호 관련)

년 월

순찰일시	순찰 인원	순찰자		순찰내용 (순찰 동선 및 범죄예방 활동 내용 등)	비고
		성명	서명		
00월00일 (○요일)	00명				
00:00					
~					
00:00					

년 월 일

확인관: ○○지구대장(파출소장)

(서명/인)

[별지 제5호서식]

<b>방법순찰 등 활동사진</b> <small>(제6조제1항제7호 관련)</small>
--

일시: '00.00.00.(0요일) 00:00~00:00	일시: '00.00.00.(0요일) 00:00~00:00
일시: '00.00.00.(0요일) 00:00~00:00	일시: '00.00.00.(0요일) 00:00~00:00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2월 16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119호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를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로,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을 “관한” 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28조”를 “제40조”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22조제1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며, 제22조제2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2년 동안 위원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6시간”을 “3시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회장”을 “주민자치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간사는 주민자치회 위원중 호선하거나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주민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간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29조에 따라 받은 수강료 중 일정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민자치회 사업예산안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민자치회 사업예산안

제19조 중 “특별법 제29조제2항”을 “특별법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있다. 다만, 임기 종료 후에는 제8조의 선정 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으며” 를 “있다” 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연임할 경우에도 제8조의 선정 절차를 따른다.

제2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연임을 하여 임기가 종료된 경우 제8조의 위원 선정 절차에 따라 신규 위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여, 그 사퇴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의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유가 구청장에게 발견된 경우
3.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피선거권이 없음이 구청장에게 발견된 경우
4.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구청장에게 발견된 경우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주민자치회는 그 위원이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위원의 해촉 여부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 여부의 대상이 된 위원은 제3항의 회의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⑤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을 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 중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를 “위원, 자원봉사자 또는 강사”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지원” 을 “지원 및 시상” 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료 등” 을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 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주민자치회와 동장이 협의하여” 를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 및” 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 를 “회계책임자” 로 한다.

-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에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8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29조, 제40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6장(제37조 및 같은 조)을 삭제한다.

제40조 중 “이외에” 를 “밖에” 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을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로, “정한다” 를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용료 등 징수범위와 요율 상한선(제29조 관련)

구분		기 준	사용료 등 (범위 내)	비 고
과목				
각종 시설 (사용료)	다목적 홀, 회의실 등 (부대시설 포함)	2시간	30,000원	○ 기준시간 초과 사용 시 1시간당 10,000원 추가 산정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	체력단련실 (헬스장)	1개월	25,000원	○ 과정별 소요되는 재료비는 별도
	취미, 교양, 생활체육 등 강좌	1개월	35,000원	

## [별표 2]

사용료 등 감면대상 및 감면액(제29조 관련)

구 분	대 상	감면 비율	비 고
각종 시설 (사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프로그램(강좌) 운영에 따른 이용</li> <li>- 관내 직능단체 등의 회의</li> <li>- 조례 제24조의 자치센터 기능 수행에 적합하다고 동장이 인정하는 경우</li> <li>- 구에서 주최(주관)하거나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행사</li> <li>-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li> <li>- 그 밖에 동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ul>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생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강좌</li> <li>- 순수 예술 부문의 창작활동·공연</li> </ul>	50%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li> <li>-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li> <li>-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li> <li>-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li> <li>-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li> <li>-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li> <li>-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li> <li>-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li> <li>-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li> </ul>	100%	서구 주민에 한정하며, 1인당 제한 강좌 수는 동별 프로그램 운영 여건에 따라 정함.  ※과정별 소요되는 재료비는 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li> <li>-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li> <li>- 「인천광역시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li> </ul>	50%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2월 16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120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제3조(구성)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라 두는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명 업무 관련 공무원
2.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지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명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명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를 대표하고, 지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를 회신과 서면심의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지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지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면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지명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지명위원회에 출석하는 서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명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제5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제6조(지원 내용)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

## 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 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자원봉사자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자원봉사센터 또는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2월 16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122호

###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2.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관리 및 안전확보를 위한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노인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공적이 뛰어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포

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⑤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여야 하고,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의3(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의4(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제2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 가족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심리검사 및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 중 “종사하는” 을 “종사하는 사람과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련 종사하는” 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 시술비(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 지원
2. 「한약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약약난임치료비 지원
3.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4.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3.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4.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2월 16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125호

###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 등 구제(驅除)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생해충 등”이란 인간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를 줄 수 있는 바퀴벌레, 파리, 빈대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 지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1. 하천변
2. 골목길 등의 위생해충 등 출몰 다발 지역
3.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위생해충 등의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생해충 등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 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구민의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2.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3. 위생해충 등 구제 및 조치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4. 위생해충 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해충 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위생해충 등으로의 피해 예방을 위  
하여 병원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지원 사업을 일반 구민과 취약  
계층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에서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을 “청년참여단원으로 위촉할” 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3.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단원 스스로 사퇴할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단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⑧ 구청장은 청년참여단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구청장은 단원의 능동적인 청년참여단 활동 촉진 및 우수한 청년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캠페인, 워크숍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의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청년참여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청년시설에 대한 세부 운영사항 등은 「인천광

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의3(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개인, 단체(기관)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등의 행정적 지원 및 실비, 활동비 지급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별표 1. 마 기준에 따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의 제목 “(청년의 고용확대 등)” 을 “(청년의 고용확대 및 안정 등)” 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혹은” 을 “또는” 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청년의 날)” 을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 지원 및 청년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년의 날과 청년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및 교육·홍보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 및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참여한 구성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의 제목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을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관련기관”을 각각 “관련 기관, 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있다”를 “있다.(별표 1. 바 기준에 따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 기업 및 단체 등에서 금전 또는 그 밖에 재산 등을 제공할 경우 참여자 선정 및 홍보활동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청년정책 활성화 시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익증진 및 발전을 위하여 청년정책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9조제1항 및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별표 1. 사 기준에 따름)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가. 청년에디터(서포터즈) 지원 기준(제9조제1항제1호 라목 관련)

1. 지원대상 : 청년에디터(서포터즈)
2. 지원내용 : 청년에디터(서포터즈) 활동비(원고료, 실비)
3. 지원횟수 및 금액

가. 원고료 : 1인당 월 10만원 이하

나. 실비 : 교통비, 식비

※ 실비 지급기준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름

나.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기준(제9조제1항제2호 라목 관련)

1.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서구 거주 청년
2. 지원내용 : 자격시험 응시료 실비(본인부담액)
3. 지원횟수 및 금액 : 1인당 연 1회 10만원 이하
4. 자격시험 종류 :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공인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

※ 단, 국가공인자격증은 큐넷, 민간정보자격서비스(공인)에서 검색되는 자격증에 한함

다. 4차산업 관련 메이커 교육 훈련 지원기준(제9조제1항제2호 마목 관련)

1.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서구 거주 청년
2. 지원내용 : 4차산업 분야 교육 훈련비
3. 지원횟수 및 금액 : 1인당 연 1회 350만원 이하

**라. 창업 자금 비용 지원기준(제9조제1항제3호 다목 관련)**

- 1. 지원대상 : 3년 이하 초기(예비) 청년창업가 또는 청년창업팀
- 2. 지원내용 : 사업개발, 마케팅, 운영 등을 위한 초기 창업기반 구축비
- 3. 지원횟수 및 금액 : 1팀당 월 30만원 이하, 1년간 지원

※ 지원기간은 창업 실적에 따라 1년 추가 지원 가능(총 2년에 한함)

**마. 청년 활동 활동비 지원기준(제9조의3제1항 관련)**

- 1. 지원대상 : 청년, 청년단체,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개인, 단체(기관) 및 법인
- 2. 지원내용 : 청년 활동 활동비(멘토비, 실비)
- 3. 지원횟수 및 금액

가. 멘토비 : 1인당 월 10만원 이하

나. 실비 : 교통비, 식비

※ 실비 지급기준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름

**바. 협약 내용에 따른 세부기준(제19조제2항 관련)**

구분	제공기관	시기	대상	제공방법 및 기준	지급수단	제공 액수 한도(1회당)	
						1인/1팀당	총액
임대료, 체험료, 관람료, 이용료, 숙박료 등	협약기관	협약기간	당첨자/선정자	당첨/선정 기준에 따라 당첨/선정된 자	시설물 이용권 또는 실비	월 3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 임대료 지원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함

### 사. 홍보방법 등 세부기준(제20조제2항 관련)

구 분	시 기	대 상	지급방법 및 기준	지급수단	제공 액수 한도(1회당)	
					1인당	총액
SNS 이벤트	연 12회 이하	참여자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홍보이벤트 참여자	지역화폐 또는 굿즈	2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퀴즈 및 게임	연 12회 이하	참여자	청년정책관련 퀴즈 및 게임 참여자	지역화폐 또는 굿즈	2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설문 및 토론	연 6회 이하	참여자	청년정책관련 설문 및 토론 참여자	지역화폐 또는 굿즈	2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 굿즈란 청년이 운영하는 사업장(인천광역시 서구 소재)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말함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해야 한다.

1. 청년 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제공
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직업훈련 등 기회의 공간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지원체계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자원 조달 방안
4. 청년정책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 제도 개선 및 발굴된 의제 등의 사항
6.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비용 등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7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자진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및 교통 이용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2월 16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130호

### 인천광역시 서구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신거북시장” 을 “거북시장” 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신거북시장” 를 “거북시장” 로 한다.

제3조 중 “신거북시장” 을 “거북시장”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신거북시장” 을 “거북시장” 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부구청장” 을 “전통시장업무 담당 국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과장은” 을 “장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를 “하고” 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시작하고” 를 “개의하고”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 ]사용허가 신청서 [ ] 갱신허가 신청서

※ 뒷면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사용자 (대표자)	법인명 (단체명)	법인등록 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 남/여)	(남 / 여)
	주소	(전화번호)	
사 용 점 포	층 제 호	허가면적	m <sup>2</sup>
사 용 기 간 (영 업 시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 시부터 : 시까지)		
사 용 료	귀 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		
사 용 조 건	귀 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사용(갱신)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판매시설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3. 설계설명서, 설계도면(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제출 서류)	1.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뒷면)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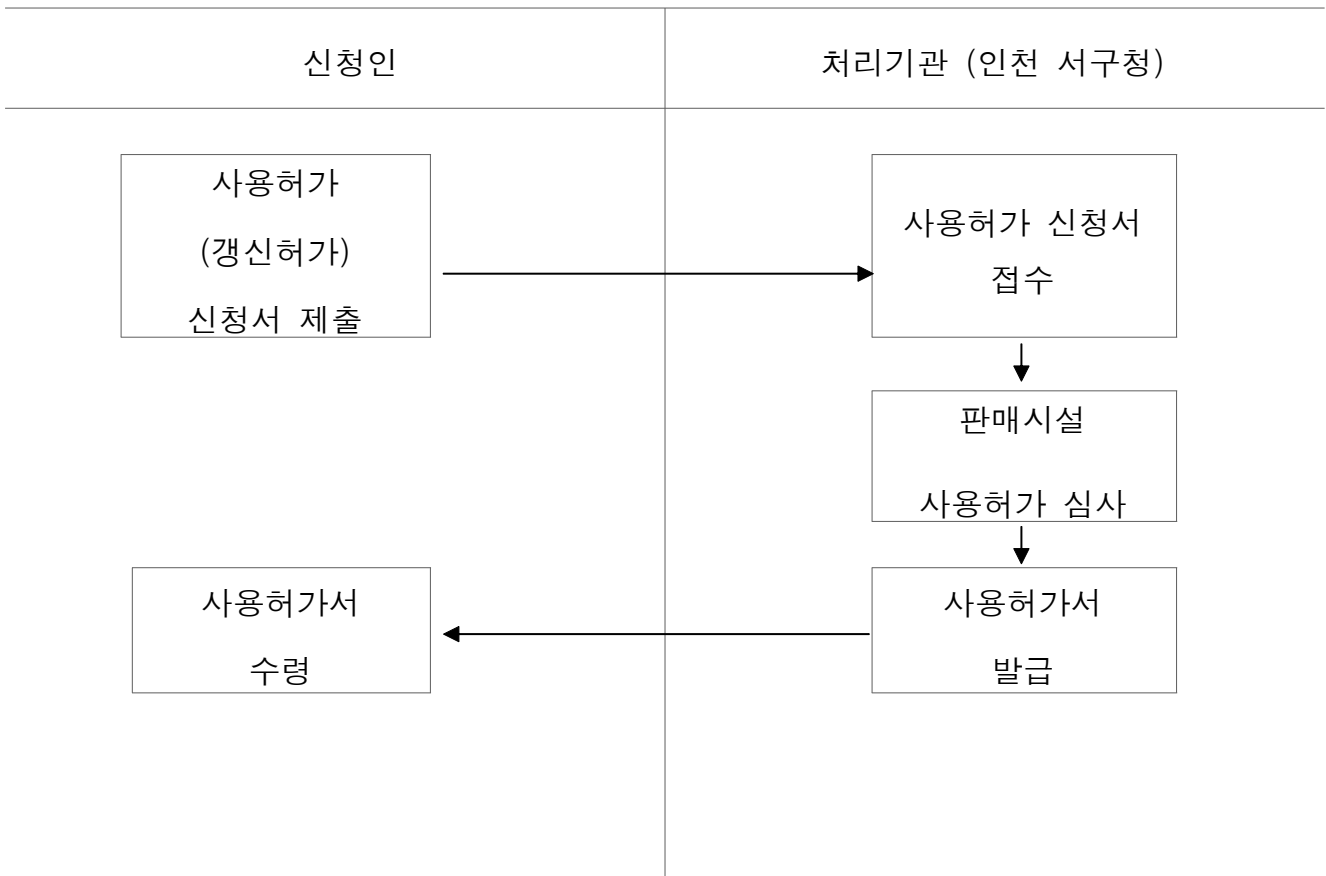
#### [동의]

판매시설 사용허가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신청 유효 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별지 제2호서식]

<b>허가 제            호</b> <b>공유재산(판매시설 점포) 사용허가서</b>			
허가 구분	<input type="checkbox"/> 사용허가 <input type="checkbox"/> 갱신허가		
성명 (법인명) (단체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용 점포	층    제    호	면    적	m <sup>2</sup>
사용 허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불임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p> <p>불임 : 허가조건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0px;">           년    월    일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b>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b> </p>			

(뒷면)

#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물) 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 )층( )호 및 그 부지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
- 2. 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거짓 진술, 거짓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허가 받은 재산의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0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인천광역시 서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인천광역시 서구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81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인천광역시 서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결정에 의한다.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 개방주차 업무담당 국장과” 를  
“위원은” 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